

# “부모부양 대가 요구할수 없다”

서울고법 “자식의 의무...딸부부에 부모돈 돌려주라” 판결

94.6.16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식의 도리이므로 부양에 든 돈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5일 70대 노부부가 셋째딸에게 자신들이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딸은 부모를 모시는 데 많은 돈이 들었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렇게 밝히고 “딸은 부모가 맡긴 돈 4천3백여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딸 부부는 90년 4월 부모가 매각을 부탁한 아파트 1채를 4천3백여만원에 판 뒤 이 돈으로 부모의 허락없이 자신들의 새 집을 구입했으므로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딸은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석에 누운 89년 2월부터 92년 4월까지 3년2개월 동안 부양하면서 파출부 고용비·밥값·치료비 등으로 5천6백만원이 들었다며 이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년에 이르러

생활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한 1차적 부양의무자인 자식의 당연한 의무인 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기자

## 부친살해 여대생 9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부(재판장 황형모 부장판사)는 15일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된 0대생 양애리(21·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양씨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을 폭행해 온 아버지에게 대해 누적된 감정이 순간적으로 터져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등 정상이 참작돼 징역 9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최익림 기자

## 존속상해 30대 구속영장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아버지에게 칼을 휘둘러 징역 1년의 형을 받고 출소한 뒤 또다시 아버지를 폭행한 한경희(37·무직·서울 도봉구 도봉2동)씨에 대해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30분께 술에 취해 아버지 한영재(68)씨를 찾아가 “아들을 고소해 교도소로 보낼 수 있느냐”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권태호 기자